

202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27조 9,969억 2천 3백만원
- 징수결정액 : 28조 9,282억 8백만원
- 실제수납액 : 27조 7,765억 7천 7백만원
- 결손처분액 : 2,859억 9백만원
- 미수납액 : 8,657억 2천 1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6.0%(전년도 97.2%)임.

〈 202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 율 (C/B)
				정리보류	시효완성			
합 계	27,996,923	28,928,208	27,776,577	269,661	16,248	865,721	99.2	96.0
지방세수입	24,112,184	25,000,502	23,862,799	269,612	15,977	852,113	99.0	95.4
지방세	24,112,184	25,000,502	23,862,799	269,612	15,977	852,113	99.0	95.4
보통세	21,877,932	22,119,840	21,731,714	31,657	0	356,469	99.3	98.2
취득세	5,221,862	5,218,465	5,147,181	519	0	70,764	98.6	98.6
주민세	672,385	779,693	771,181	653	0	7,859	114.7	98.9
재산세	3,522,079	3,525,357	3,474,933	418	0	50,005	98.7	98.6
자동차세	1,052,439	1,050,568	994,650	1,067	0	54,850	94.5	94.7
레저세	106,133	105,128	105,128	0	0	0	99.1	100.0
담배소비세	582,205	604,609	576,611	18,789	0	9,210	99.0	95.4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 율 (C/B)
				정리보류	시효완성			
지방소비세	2,786,892	2,678,871	2,678,871	0	0	0	96.1	100.0
지방소득세	7,933,937	8,157,149	7,983,158	10,211	0	163,780	100.6	97.9
목적세	2,020,552	1,950,457	1,905,460	6,666	0	38,331	94.3	97.7
지역자원시설세	313,104	298,289	295,088	81	0	3,120	94.2	98.9
지방교육세	1,707,448	1,652,168	1,610,372	6,585	0	35,211	94.3	97.5
지난년도수입	213,700	930,205	225,625	231,290	15,977	457,313	105.6	24.3
지난년도수입	213,700	930,205	225,625	231,290	15,977	457,313	105.6	24.3
세외수입	353,209	396,187	382,259	49	271	13,608	108.2	96.5
경상적세외수입	127,655	144,039	143,718	0	0	321	112.6	99.8
재산임대수입	9,507	11,070	10,749	0	0	321	113.1	97.1
공유재산임대료	9,507	11,070	10,749	0	0	321	113.1	97.1
수수료수입	895	520	520	0	0	0	58.1	100.0
증지수입	895	520	520	0	0	0	58.1	100.0
이자수입	117,253	132,449	132,449	0	0	0	113.0	100.0
공공예금이자수입	111,136	118,374	118,374	0	0	0	106.5	100.0
기타이자수입	6,117	14,075	14,075	0	0	0	230.1	100.0
임시적세외수입	223,748	250,264	237,181	49	271	12,763	106.0	94.8
재산매각수입	147,870	164,579	164,007	0	0	572	110.9	99.7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147,870	164,579	164,007	0	0	572	110.9	99.7
보조금반환수입	0	5	5	0	0	0	-	100.0
위탁비반환수입	0	5	5	0	0	0	-	100.0
기타수입	70,728	71,444	71,284	0	0	161	100.8	99.8
체납처분수입	8	125	37	0	0	88	462.5	29.6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 율 (C/B)
				정리보류	시효완성			
위약금	222	129	107	0	0	22	48.2	82.9
그외수입	70,498	71,190	71,140	0	0	50	100.9	99.9
지난년도수입	5,150	14,236	1,885	49	271	12,030	36.6	13.2
지난년도수입	5,150	14,236	1,885	49	271	12,030	36.6	13.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806	1,884	1,360	0	0	524	75.3	72.2
변상금	1,806	1,884	1,360	0	0	524	75.3	72.2
변상금	1,806	1,884	1,360	0	0	524	75.3	72.2
보조금	1,511	1,500	1,500	0	0	0	99.3	100.0
국고보조금등	1,511	1,500	1,500	0	0	0	99.3	100.0
국고보조금등	1,511	1,500	1,500	0	0	0	99.3	100.0
국고보조금	1,511	1,500	1,500	0	0	0	99.3	1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530,019	3,530,019	3,530,019	0	0	0	100.0	100.0
보전수입등	3,530,019	3,530,019	3,530,019	0	0	0	100.0	100.0
잉여금	3,254,857	3,254,857	3,254,857	0	0	0	100.0	100.0
순세계잉여금	3,254,857	3,254,857	3,254,857	0	0	0	100.0	100.0
전년도이월금	275,162	275,162	275,162	0	0	0	100.0	100.0
전년도이월사업비	275,162	275,162	275,162	0	0	0	100.0	100.0

※ 결손액=정리보류+시효완성,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2. 세출결산

○ 당초예산 : 3조 3,823억 4천만원

○ 예산증감 : △1,268억 4천만원

※ 추경예산 △1,326억 2천 5백만원, 사고이월 49억 9천만원, 예비비 7억 9천 5백만원

○ 예산현액 : 3조 2,555억원

○ 지출액 : 3조 1,550억 5천 8백만원

○ 이월액 : 0원

○ 집행잔액 : 1,004억 4천 1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3.1%(전년도 0.6%)가 발생

- 집행잔액 사유별 금액으로는 지출잔액 952억 7천 4백만원,

낙찰차액 1억 6천 5백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0억 1백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28만 3천원임.

< 2023회계연도 재무국 사업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3,255,500	3,155,058	-	100,441	3.1%
일반예산계	817,695	799,381	-	18,313	2.2%
인력운영비(통합편성)	815,592	797,461	-	18,130	2.2%
기본경비	2,103	1,920	-	183	8.7%
재무활동	16,674	16,674	-	0	0.0%
사업예산계	2,421,131	2,339,003	-	82,128	3.4%
일반사업비	45,854	40,087	-	5,767	12.6%
타기관 지원	2,375,277	2,298,916	-	76,361	3.2%
자치구 재정보전금	1,790,746	1,727,272	-	63,474	3.5%
시세 징수교부금	581,888	569,001	-	12,887	2.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643	2,643	-	0	0.0%

〈 2023회계연도 부서별 세출결산 〉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재 무 국	3,255,499,603	3,155,058,374	-	100,440,946	3.1%
재 무 과	818,782,926	800,316,807	-	18,466,119	2.3%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591,180	535,854	-	55,326	9.4%
2022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76,388	234,657	-	41,730	15.1%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172,585	144,886	-	27,699	16.0%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242,792	220,811	-	21,981	9.1%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7,037	24,650	-	2,387	8.8%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90,630	54,360	-	36,270	40.0%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149,218	147,600	-	1,618	1.1%
기본경비	1,641,610	1,492,297	-	149,313	9.1%
인력운영비(통합편성)	815,591,486	797,461,692	-	18,129,794	2.2%
재산관리과	42,632,736	42,573,377	-	59,359	0.1%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23,997,555	23,972,490	-	25,065	0.1%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782,415	1,754,595	-	27,820	1.6%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35,362	131,750	-	3,612	2.7%
기본경비	43,759	40,897	-	2,862	6.5%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16,673,645	16,673,645	-	-	0.0%
계약심사과	95,777	94,795	-	982	1.0%
계약심사 업무추진	28,200	27,218	-	982	3.5%
기본경비	67,577	67,577	-	-	0.0%
세 제 과	1,795,321,938	1,731,771,049	-	63,550,606	3.5%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79,720	147,226	-	32,494	18.1%
마을세무사 운영	12,740	12,623	-	117	0.9%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200	0	-	1,200	100.0%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1,517,447	1,506,291	-	10,873	0.7%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	96,300	94,750	-	1,550	1.6%
기본경비	125,400	94,919	-	30,481	24.3%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재정보전금	1,790,745,652	1,727,271,761	-	63,473,891	3.5%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643,438	2,643,438	-	-	0.0%
국고보조금 반환	41	41	-	-	0.0%
세 무 과	592,128,397	573,941,862	-	18,186,535	3.1%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248,176	193,334	-	54,842	22.1%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907,925	774,746	-	133,179	14.7%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89,799	41,723	-	48,076	53.5%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396,300	387,913	-	8,387	2.1%
시세 세원발굴 지원	100,000	99,934	-	66	0.1%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376,850	375,888	-	962	0.3%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50,000	45,838	-	4,162	8.3%
지방세 불복대응 비용	100,000	63,341	-	36,659	36.7%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914,096	1,912,050	-	2,046	0.1%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4,990,425	0	-	4,990,425	100.0%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916,660	896,150	-	20,510	2.2%
기본경비	150,085	149,939	-	146	0.1%
시세 징수교부금	581,888,081	569,001,006	-	12,887,075	2.2%
38세금징수과	6,537,829	6,360,484	-	177,345	2.7%
고액 체납시세 징수	618,320	610,557	-	7,763	1.3%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054,412	1,884,830	-	169,582	8.3%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3,790,582	3,790,582	-	-	0.0%
기본경비	74,515	74,515	-	-	0.0%

가. 예산 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전용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 이체 : 해당사항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2022년 공유재산 손해보험 전수조사 후속조치를 위한 신규 가입 건수 증가로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사업에서 1억 1천 6백만원, 고액 체납시세 징수에 필요한 부동산 공매대행 수수료 및 대여금고 개문비용 지급을 위하여 「고액 체납시세 징수」(공공운영비 ⇒ 사무관리비) 사업에서 1천 8백만원
총 2건, 1억 3천 4백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음.

마. 예비비 사용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유재산 분할납부의 상승된 이자율 적용으로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사업에서 5억 6천 5백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사업에서 2억 3천만원
총 2건, 7억 9천 5백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2023회계연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공시가격조사' 1개 사업에 14억 9천 9백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자치구에 14억 9천 2백만원 교부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8만 3천원임.

3. 기금결산 : 해당없음.

4. 채권현재액 : 붙임 참조.

5. 채무결산 : 해당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3년도말 실국별 관리 공유재산

- 토지 108,198,017 m^2 78조 1,875억 1천 6백만원,
 - 건물 13,202,713 m^2 9조 471억 7천 9백만원,
 - 기타 14,708,826건 51조 7,335억 5천 4백만원,
- 총 138조 9,682억 4천 9백만원 상당의 금액

〈 2023회계연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23년도 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135,162,589	5,355,681	1,550,021	138,968,249	
행정 재산	계	106,733,366	4,405,596	1,110,695	110,028,267
	공용재산	11,642,167	750,134	188,135	12,204,166
	공공용재산	83,952,997	3,297,517	759,499	86,491,016
	기업용재산	9,373,582	141,256	159,821	9,355,017
	보존재산	1,764,620	216,688	3,240	1,978,068
일반재산	22,934,204	509,158	439,326	23,004,036	
건설중인재산	5,495,020	440,927	-	5,935,946	

II. 검토의견

1. 세입결산

〈 (참고)서울특별시 세입 결산 총괄 현황 〉

시세입 결산 총괄 : 50조 7,586억원(수납률 98.6%)

(단위: 억원)

구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	비율	
						㉢/㉠	㉢/㉡
2023	51조 4,900	52조 2,453	50조 7,586	2,932	1조 1,935	98.6%	97.2%
일반회계	36조 5,074	37조 4,619	36조 2,153	2,890	9,576	99.2%	96.7%
특별회계	14조 9,826	14조 7,834	14조 5,433	42	2,359	97.1%	98.4%
2022	53조 4,688	56조 8,224	55조 5,717	1,146	1조 1,361	103.9%	97.8%
증 감	△1조 9,788	△4조 5,771	△4조 8,131	1,786	574	△5.4%p	△0.6%p

※ 전년 대비 4조 8,131억원(8.7%) 부족징수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예산현액 ㉠	결 산 액 (실제수납액) ㉡	예산현액 대비		2022년 결산 ㉢	전년대비 증감액 (㉢-㉣)
			차액 (㉢-㉠)	비율 (㉢/㉠)		
합 계	51조 4,900	50조 7,586	△7,314	98.6%	55조 5,717	△4조 8,131
일 반 회 계	36조 5,074	36조 2,153	△2,921	99.2%	40조 7,141	△4조 4,988
지방세*	24조 1,122	23조 8,628	△2,494	99.0%	26조 1,638	△2조 3,010
세 외 수 입	1조 3,350	1조 3,885	535	104.0%	1조 3,366	519
지방교부세	1,992	2,012	20	101.0%	2,683	△671
보 조 금	6조 5,653	6조 4,782	△871	98.7%	6조 3,955	827
보전수입 등	4조 2,957	4조 2,846	△111	99.7%	6조 5,499	△2조 2,653
특 별 회 계	14조 9,826	14조 5,433	△4,393	97.1%	14조 8,576	△3,143
공기업특별회계	2조 27	2조 449	422	102.1%	1조 8,035	2,414
기타특별회계	12조 9,799	12조 4,984	△4,815	96.3%	13조 541	△5,557

* 지방세: 전년 대비 2조 3,010억원(8.8%) 부족징수

가. 재무국 세입 결산

○ 202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7조 9천 969억 2천 3백만원) 대비 0.8%(2,203억 4천 6백만원) 부족 징수된 27조 7,765억 7천 7백만원 수준임.

- 이는 전년(2022회계연도) 재무국 세입 결산액*(32조 6,437억 3천 1백만원) 대비 14.9%(4조 8,671억 5천 4백만원) 감소한 것임.

※ 전년도(2022회계연도) 재무국 세입결산: 예산현액(29조 5,343억원) 대비 10.5%(3조 1,094억원) 초과 수납된 32조 6,437억원

※ 징수결정액(28조 9,282억원) 대비 4.1%(1조 1,516억 3천 1백만원) 부족 징수

〈2023회계연도 재무국 세원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예산대비		2022 결산액(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합 계	27,996,923	27,776,577	-220,346	99.2	32,643,731	-4,867,154	85.1
지방세수입	24,112,184	23,862,799	-249,385	99.0	26,163,797	-2,300,998	91.2
세외수입	353,209	382,259	29,050	108.2	340,446	41,813	112.3
보조금	1,511	1,500	-11	99.3	1,526	-26	98.3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530,019	3,530,019	0	100.0	6,137,962	-2,607,943	57.5

○ 2023회계연도 재무국 세입결산 규모(27조 7,766억원)는 서울시 세입결산 규모(50조 7,628억원)의 54.7%를 차지하는 등 재무국은 서울시 세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임.

- 2023회계연도 재무국 세입결산 결과를 보면, 전년(2022회계연도) 세입 결산액(32조 6,437억 3천 1백만원) 대비 4조 8,672억원의 세입 감소에 더하여 세입예산(27조 9,969억원) 대비 2,203억원(0.8%)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였고, 이는 “지방세수입”의 부족 징수(예산현액 대비 1.0%, 2,494억원)에 따른 것임.

- 서울시의 경우 전체 세입예산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세입의 결손 방지는 매우 중요한 재무국의 책무라고 할 것임.

나. 지방세수입 결산(23조 8,628억원)

- 2023회계연도 지방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4조 1,122억원) 대비 1.0% (2,494억원) 부족 징수된 23조 8,628억원으로, 전년 결산(26조 1,638억원*) 대비 8.8%(2조 3,010억원) 감소한 수준임.
- ※ 전년도(2022회계연도) 지방세수입 결산: 예산현액(23조 956억원) 대비 13.3% (3조 682억원) 초과 징수(26조 1,638억원)

〈 주요 세목별 징수실적 〉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예산대비		2022년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감액 (B-A)	비율 (B/A)		증감액 (B-C)	증감률 (B-C/C)
합 계	241,122	238,628	-2,494	99.0	261,638	-23,010	-8.8
취득세	52,219	51,472	-747	98.6	58,712	-7,240	-12.3
재산세	35,221	34,749	-472	98.7	39,189	-4,440	-11.3
지방소비세	27,869	26,789	-1,080	96.1	27,603	-814	-2.9
지방소득세	79,339	79,832	493	100.6	88,344	-8,512	-9.6
기타세목	46,474	45,786	-688	98.5	47,790	-2,004	-4.2

※ 초과징수 :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 부족징수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

- 지방세 세입의 최근 5년간(2019~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결산 실적을 분석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평균 14.2%(2조 9,747억원) 수준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여 매년 과다한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 최근5년간 지방세 세입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B-A)	증가율(B/A)
2023	24조1,122억원 (전년대비4.4%증)	24조1,122억원	23조 8,628억원	△2,494억원	△1.0
2022	23조956억원 (전년대비15.3%증)	23조 956억원	26조 1,638억원	3조 682억원	13.3
2021	20조237억원 (전년대비2.4%증)	20조 237억원	26조 12억원	5조 9,775억원	29.9
2020	19조5,524억원 (전년대비7.3%증)	19조 5,524억원	23조 3,930억원	3조 8,406억원	19.6
2019	18조2,213억원 (전년대비6.6%증)	18조 2,213억원	20조 4,581억원	2조 2,368억원	12.3

- 2021회계연도 이후 전년 예산 대비 결산률(세입예산 대비 징수액)은 지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2023회계연도의 경우는 지방세수입(재산세 등)을 감액(7,696억원)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나,

- 2013회계연도 이후 10년만에 1.0% (2,494억원)의 세입 결손까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결산액 규모 또한 전년(2022회계, 26조 1,638억원) 대비 2조 3,010억원 규모 감소하는 지방세 수입의 역성장이 나타났음.

* 2021회계연도 129.9%, 2022회계연도 113.3%, 2023회계연도 99.0%

〈 2023년 제1회 재무국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세 목	당초예산	감추경	최종예산
합 계	6,310,958	769,600	5,541,358
재산세	4,163,279	641,200	3,522,079
특별시분	1,947,034	268,800	1,678,234
도시지역분	2,216,245	372,400	1,843,845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332,731	20,900	311,831
지방교육세	1,814,948	107,500	1,707,448

〈 연도별 지방세수입 결산 현황 〉

(단위: 억원,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123,053	119,130	127,356	137,875	141,258	155,554	170,965	182,213	195,524	200,237	230,956	241,112
결산액	122,441	117,916	132,496	156,244	165,693	178,171	191,033	204,581	233,930	260,012	261,638	238,628
결산율	99.5	99.0	104.0	113.3	117.3	114.5	111.7	112.3	119.6	129.9	113.3	99.0
증감률	-	-3.7	12.4	17.9	6.0	7.5	7.2	7.1	14.3	11.1	0.6	-8.8

- 세입의 감소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세입의 결손은 25개 자치구와 교육청 등에 의무적으로 전출*하는 예산조정 등을 유발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건전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할 것임.

* 보통세(취득세 등)의 10%,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징수액 100%를 서울시 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전출하고 있음.

- 또한 재무국 세입 결손(2,203억원) 발생은 “지방세수입”의 부족 징수(예산현액 대비 1.0%, 2,494억원)에 원인이 있고, 10개의 지방세목 중 주민세(114.7%)와 지방소득세(100.6%)를 제외한 8개의 세목에서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 2023년도 지방세 각 세목별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세목	예산현액	실수납액	비율
취득세	5,221,862	5,147,181	98.6
주민세	672,385	771,181	114.7
재산세	3,522,079	3,474,933	98.7
자동차세	1,052,439	994,650	94.5
레저세	106,133	105,128	99.1
담배소비세	582,205	576,611	99.0
지방소비세	2,786,892	2,678,871	96.1
지방소득세	7,933,937	7,983,158	100.6
지역자원시설세	313,104	295,088	94.2
지방교육세	1,707,448	1,610,372	94.3

- 재무국의 “지방세수입”의 확충과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세입 추계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추계 방법의 도입과, 추가경정 편성 등을 통해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음.

① 취득세

- 취득세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5조 2,219억원) 대비 1.4%(747억원) 부족 징수된 5조 1.472억원으로, 전년 결산(5조 8,712억원) 대비 12.3% (7,240억원) 부족 징수된 수준임(지방세수입의 21.6% 점유).

※ 2022회계연도 취득세 세입 결산: 예산현액(6조 2,046억원) 대비 5.4%(3,334억원) 부족 징수된 5조 8.712억원

※ 지방소비세(1,080억원) 다음으로 큰 세입 결손이 발생한 세목임.

〈 취득세 징수실적 〉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		예산대비		2022년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감액 (B-A)	비율 (B/A)		증감액 (B-C)	증감률 (B-C/C)
합 계	52,219	51,472	-747	98.6	58,712	-7,240	-12.3
부동산	45,408	43,566	-1,842	95.9	51,146	-7,580	-14.8
차량	6,811	7,906	1,095	116.1	7,566	340	4.5

- 취득세 세입은 2021회계연도에 가장 높은 결산 실적(8조 1백억원)을 보인 후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최근 5년 간 취득세 징수액 증감 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55,908	74,707	80,100	58,712	51,472
(증가율)	7.7	33.6	7.2	-26.7	-12.3
부동산	49,372	67,230	72,448	51,146	43,566
(증가율)	8.8	36.2	7.8	-29.4	-14.8
차량	6,536	7,477	7,652	7,566	7,906
(증가율)	0.2	14.4	2.4	-1.1	4.5

- 세부적으로, 부동산 취득세 세입(4조 3,566억원)은 전년 결산(5조 1,146억원) 대비 14.8%(7,580억원) 부족 징수되었음.
- 재무국은 2023회계연도 취득세 세입 관련 전국적 부동산경기 동향에 대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주택 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주택 매매가격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2.4% 하락) 이후 최저 수준(4.6%)으로 하락하였고,
- 주택 거래량(월평균 4.7만 호 수준)은, 전년(2022회계연도, 4.2만 호) 대비 11% 증가하였으나, 직전 5년(2017~2021회계연도) 평균 거래량(8.2만 호)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등 주택 관련 경기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택경기 회복 지연 등을 이유로 들고 있음.
-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부동산 취득세 징수 실적 및 여건에 대해서는,
 - 거래량은 고금리 및 주택경기 불확실 등 매수심리 위축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 신고 건수가 감소*하였고, 부동산 중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하락했으며, 주택 유상거래 실적은 전년도 수준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전년(192,082건) 대비 △7.6% 감소한 177,547건 수준

[서울 부동산취득세 신고 현황]

	합 계	주 택	건 물	토 지
신고건수	177천건	115천건	50천건	12천건
전년대비(증감율/건수)	-8%↓(14천건↓)	-0.5%↓(0.5천건↓)	-20.8%↓(13천건↓)	-7.9%↓(1천건↓)

*서울시 세무종합 시스템 발취 (2023년말 기준)

[부동산 취득세 신고 현황]

(‘24.3.8기준)(단위: 건)

신고 건수	합계	주 택			건축물			토 지		
		소계	매매등	무상	소계	매매등	무상	소계	매매등	무상
'23년	177,547	115,224	110,456	4,768	50,328	48,484	1,844	11,995	10,700	1,295
'22년	192,082	115,714	106,032	9,682	63,453	59,990	3,463	12,915	10,744	2,171
증감 (증감률)	△14,795 (△7.6%)	△490 (△0.4%)	4,424 (4.2)	△4,914 (△50.8)	△13,125 (△20.7%)	△11,506 (△19.2)	△1,619 (△46.8)	△920 (△7.1%)	△44 (△0.4)	△876 (△40.3)

[최근 3년 부동산 취득세 신고 추이]

(단위: 건)

신고건수	합계	주택	건축물	토지
2022년	192,082	115,714	63,453	12,915
2021년	291,848	198,269	78,731	14,848
2020년	351,516	261,006	73,857	16,653

[주택 취득세 증가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합계	법인	2주택	3주택	증여
건수	4,172	656	1,639	1,577	300
금액	2,837	998	759	789	291

- ※ 주택 중과세로 인한 세입증대 효과 추정액은 약 1,992억원임
- ※ 전년 대비 1.5% (전국 3.8%) 하락한 10억 51백만원 수준(12월 기준)
- ※ 도봉·강북 등 동북권(△3.23%)과 서북권(△2.89%) 하락폭이 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단위: 천원, %)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전년대비 증감률)	1,051,458 (△1.5%)	1,067,590 (△7.3%)	1,151,469 (28.9%)	893,100 (8.0%)	827,228 (15.3%)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전년대비 증감률)	449,530 (△3.8%)	468,130 (△9.0%)	514,584 (29.8%)	396,410 (12.7%)	351,787 (8.2%)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

- ※ 총 73,636건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거래

{ '20~'23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징수 현황 }

(단위: 건, 억원, %)

가격구간	적용세율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건수	취득세	점유비	건수	취득세	점유비	건수	취득세	점유비	건수	취득세	점유비
합계		73,636	16,437	100	73,532	13,557	100	152,557	28,504	100	203,593	29,509	100
6억이하	1%	37,467	1,688	10	47,726	2,673	20	91,973	4,628	16	122,513	4,834	16
9억이하	1~3%	14,540	2,367	14	10,767	1,962	14	26,391	4,525	16	43,765	6,527	22
15억이하	3%	14,160	5,057	31	9,173	3,394	25	21,015	8,023	28	24,118	8,526	29
15억초과	3%	7,469	7,325	45	5,866	5,528	41	13,178	11,328	40	13,197	9,622	33

- 차량 취득세의 경우는 고가의 외국산 차량 및 친환경차량 등록 대수의 꾸준한 증가로, 전년 결산(7,566억원) 대비 4.5%(340억원) 증가한 7,906억원 수준으로 부동산경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차량 취득세 징수실적 〉

(단위: 억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차 량	6,536	7,477	7,652	7,566	7,906
(증가율)	0.2	14.4	2.4	-1.1	4.5

-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지방소득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예산 규모를 가진 세목으로서,

전년(2022회계연도, 3334억원)에 이어 연속하여 대규모 세입 결손(2023회계연도 747억원)이 발생하는 등 매년 과다한 세수추계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취득세 세수추계 방식에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다 면밀한 추계 기법의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한 추계 전담기구의 설치 등 서울시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재무국 실천력 있는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의회는 별도의 세입추계 조직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임.

〈최근 5년간 취득세 예산 대비 결산현황〉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수납률
2023	52,219	52,219	51,472	-747	98.6
2022	62,046	62,046	58,712	-3,334	94.6
2021	50,589	50,589	80,100	29,511	158.3
2020	46,330	46,330	74,707	28,377	161.2
2019	42,738	42,738	55,908	13,170	130.8

〈연도별 취득세(부동산) 예산 추계 적용지표〉

연도	유형별점유비	거래량 증감률	과표 신장율	징수율	비고
2019	최근3년 평균	'04~'08년 평균*	(주택)최근2년평균 (건물)최근3년평균 (토지)최근3년평균	최근5년 평균	*18년 정책과 유사한 정책 적용 기간
2020	최근2년 평균	'08~'09년 평균*	최근2년평균	-	*19년 시장상황과 유사한 기간
2021	최근2년 평균	최근 3년 평균	최근2년평균	-	*20년 시장상황과 유사한 기간
2022	최근2년 평균	최근 3년 평균	최근2년평균	-	*21년 시장상황과 유사한 기간
2023	최근2년 평균	최근 5년 평균	최근2년평균	최근2년 평균	*22년 시장상황과 유사한 기간

② 지방소득세

○ 2023회계연도 ‘지방소득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7조 9,339억원) 대비 0.6%(493억원) 초과 수납된 7조 9,832억원으로,

- 전년 결산(8조 8,344억원) 대비 9.6%(8,512억원) 감소한 수준이기는 하나, 주민세(114.7%)와 함께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세목(100.6%)이며, 지방세수입 중 가장 큰 규모의 세목으로 지방세수입의 33.5%를 점유하고 있으며,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세목임.

※ 2022회계연도 지방소득세 세입 결산: 예산현액(6조 521억원) 대비 46.0%(2조 2,309억원) 초과 징수(8조 8,344억원).

○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분 및 법인 소득분과,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매월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특별징수분, 부동산 등의 양도에 과세하는 양도소득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회계연도 지방소득세 초과 세입에도 불구하고, 세세목별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양도소득분(△0.3%, △20억원)과 법인소득분(△3.0%, △788억원)에서 세입 결손이 발생하였고, 종합소득분(11.0%, 1천억원)과 특별징수분(0.8%, 301억원)에서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방소득세 징수실적 〉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		예산대비		2022년 결 산 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감액 (B-A)	비율 (B/A)		증감액 (B-C)	증감률 (B-C/C)
합 계	79,339	79,832	493	100.6	88,344	-8,512	-9.6
종합소득	9,099	10,099	1,000	111.0	10,139	-40	-0.4
양도소득	7,408	7,388	-20	99.7	12,616	-5,228	-41.4
법인소득	26,310	25,522	-788	97.0	30,584	-5,062	-16.6
특별징수	36,522	36,823	301	100.8	35,005	1,818	5.2

- 이는 취득세 세입 여건과 마찬가지로 고금리 및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법인실적의 저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수 및 소득의 증가에 힘입어 세입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임.

- (종합소득분) '22년 귀속 개인사업자 신고 인원 및 소득 증가
 -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 : ('21귀속) 933.9만명 → ('22귀속) 1,027.5만명 <+10.0%>
 - 종합소득세 과세소득금액(조원) : ('21귀속) 299.5 → ('22귀속) 337.5 <+12.7%>
- (양도소득분) 고금리 및 부동산시장 침체로 부동산 거래 감소
 - 주택매매거래량(만호): ('21.11.~'22.10.) 57.1 → ('22.11.~'23.10.) 53.0 <△7.1%>
- (법인소득분)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실적 저조
 -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 ('21) 119.7 → ('22) 81.7 <△31.8%>
('22上) 63.6 → ('23上) 18.8 <△70.4%>
- (특별징수분) 상용근로자 수 증가 및 월평균 임금 상승
 - 상용근로자수(만명): ('22)1,569 → ('23)1,617 <+3.0%>
 - 상용근로자임금(월평균, 만원): ('22.1~'22.12) 410 → ('23.1~'23.10) 419 <+2.3%>

- 한편, 지방소득세 추계방식을 보면 정부 국세 예산안을 기초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과 지방세 중 서울시 점유비를 적용하여 지방소득세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 예산 편성 방법 〉

- 종합소득분은 소득세 예산 × 지방세 비율 × 서울시 점유비 × 징수율
- 양도소득분은 소득세 예산 × 지방세 비율 × 서울시 점유비 × 거래량 감소율 × 징수율
- 법인소득분은 법인세 예산 × 지방세 비율 × 서울시 점유비 × 징수율
- 특별징수분은 원천세 예산 × 지방세 비율 × 서울시 점유비 × 징수율

- 이로 인해 지방세수입 중 가장 큰 세입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평균 22.5% 수준의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는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소득세 독립세화(2015년) 취지에 맞는 독자적인 추계방식 마련이 필요한 세목이라고 하겠음.

〈 최근 5년간 지방소득세 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억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B-A)	결산율 (B/A)
2023	79,339	79,339	79,832	493	100.6
2022	60,522	60,522	88,344	27,822	146.0
2021	51,964	51,964	74,273	22,309	142.9
2020	54,330	54,330	61,076	6,746	112.4
2019	52,385	52,385	58,058	5,673	110.8

③ 재산세(특별시분, 도시지역분)

- 2023회계연도 ‘재산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3조 5,521억원) 대비 1.3% (472억원) 부족 징수된 3조 4,749억원으로 전년(3조 9,189억원) 대비 11.3%(4,440억원) 감소한 수준이며, 총 지방세 수입의 14.6% 규모임.
- ※ 2022회계연도 재산세 세입 결산: 예산현액(3조 8,276억원) 대비 2.4%(913억원) 초과 징수(3조 9,189억원).

〈 재산세 징수실적 〉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		예산대비		2022년 결산액	전년대비	
	예산액	징수액	증감액	비율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5,221	34,749	-472	98.7	39,189	-4,440	-11.3
특별시분	16,782	16,595	-187	98.9	18,862	-2,267	-12.0
도시지역분	18,439	18,154	-285	98.5	20,327	-2,173	-10.7

- 본 재산세 중 ‘특별시분’(공동재산세) 세입(1조 6,595억원)은 자치구 간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본래 자치구세인 재산세(부동산) 징수액의 50%를 서울시 세입과목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 간 재정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재원(재무국의 공동재산세전출은 “재정보전금” 사업의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란 통계목으로 편성)으로 사용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경비

〈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 교부 현황_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교부액	1,727,272	1,959,075	1,751,350	1,577,150	1,300,009

※ 25개 자치구 균등 교부

- 공시가격 또는 공시지가 등(재산세 중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과세 기준)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하여 거래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상승하여, 재산세 세입은 매년 확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 2023년 세입예산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정부 정책(2022.11.23. 부처합동)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2023년도 재산세 세입도 감소하였음.

※ 수정 현실화율: 기존(공동주택 72.7%, 단독 60.4%, 토지 74.7%)

→ 수정(공동주택 69.0%, 단독 53.6%, 토지 65.5%)

〈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현황 〉

(단위: %)

연도	주택			건물	토지
	평균	단독	공동		
2023	-12.39	-7.46	-17.32	5.1	-5.56
2022	12.09	9.95	14.22	5.4	11.54
2021	14.87	9.83	19.91	1.37	11.54
2020	10.83	6.92	14.73	2.82	8.25

- 이에 따라, 재무국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서울 특별시 세입 대상 재산세와 그 병기세목의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한바 있음.

※ 서울특별시 세입원으로서의 재산세는 세입 전액을 자치구로 균등 배분하는 '특별시분 재산세*'와 시 세입원인 '재산세 도시지역분' 구분되며, 이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 자원시설세' 및 재산세액의 20%로 산정되는 '지방교육세'로 구성되어 있음.

〈 2023회계연도 제1회 재산세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지방세수입	24,881,784	24,112,184	△769,600	△3.1%
재산세	4,163,279	3,552,079	△641,200	△15.4%
지역자원시설세	334,004	313,104	△20,900	△6.3%
지방교육세	1,814,948	1,707,448	△107,500	△5.9%

○ 다만, 재산세는 보유세로 경제여건 등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이 적고, 과세 표준(시가표준액 등)은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세목일 뿐 아니라, 정부의 공시가격 인하 정도 또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 재산세 등을 감액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했음에도 세입 결손(472억원)이 발생한 것은 재산세(특별시분)의 자치구 분배, 지방교육세*의 교육청 전출금의 조정 등을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바, 세출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재무국의 책임있는 해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지방교육세 세율) 부동산취득세 20%, 재산세 20%, 주민세 25%, 자동차세 30%, 레저세 40%, 담배소비세 43.99%, 등록면허세 20%

〈재산세 예산 대비 결산 추이〉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C=B-A	수납률 (B/A)
2023	35,221	35,221	34,749	-472	98.7
2022	38,276	38,276	39,189	913	102.4
2021	33,946	33,946	36,461	2,516	107.4
2020	29,990	29,990	32,040	2,050	106.8
2019	26,151	26,151	28,411	2,260	108.6

〈 재산세 과세표준(부동산)〉

구 분	재 산 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110조)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109조) . 주 택 : 시가표준액의 60%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

※ 「지방세법」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공동재산세 과세대상은 항공기, 선박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됨(지방세기본법 제9조).

④ 자동차세

- 2023회계연도 자동차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1조 524억원) 대비 5.5% (578억원) 부족 징수된 9,946억원으로, 전년(1조 258억원) 대비 3.0% (312억원) 감소한 수준이며, 전년에 이어 연속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지방세수입의 4.2%를 차지하는 규모임.

※ 2022회계연도 자동차세 세입 결산: 예산현액(1조 2,165억원) 대비 15.7% (1,907억원) 부족 징수된 1조 258억원

〈 자동차세 징수실적 〉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예산대비		2022년 결 산 액	전년대비	
	예산액	징수액	증감액	비율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524	9,946	-578	94.5	10,258	-312	-3.0
소유분	6,424	6,310	-114	98.2	6,260	50	0.8
주행분	4,100	3,636	-464	88.7	3,998	-362	-9.1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의 재산세적 성격의 ‘소유분 자동차세’와 유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되는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 부담 성격의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성하고 있으며,

* 자동차세 보전분 및 유가보조금 보전분으로 구분됨.

- 2023회계연도 소유분 자동차세 세입은 정액세율(연 10만원) 대상인 친환경 차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의 증가로 예산 대비 부족 징수(0.2%, 114억원) 하였고,

※ (소유분) 6,310억원 징수, 예산 6,425억원 대비 △115억원(△1.8%) 부족 징수

〈 2019년 ~ 2023년 서울시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대, 억원)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등록대수 (증감률)	3,191,162 (△0.07)	3,193,351 (0.5%)	3,176,743 (0.6%)	3,157,361 (0.9%)	3,124,157 (0.0%)
자동차세 (증감률)	6,310 (0.8)	6,260 (0.3%)	6,241 (2.3%)	6,102 (1.3%)	6,022 (1.4%)

- 주행분 자동차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연장에 따라 예산 대비 11.3% (464억원)가 부족 징수되어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음.

※ (주행분) 3,636억원 징수, 예산 4,100억원 대비 △464억원(△11.3%) 부족 징수
· 자동차세 보전분 1,430억원, 유가보조금 보전분 2,206억원

-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결손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 및 대정부 건의 등 재무국의 대응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단위: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24.6.30.
		△20%	△30%	△37%	휘발유△25% 경유LPG △37%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LPG	203	163(△40)	142(△61)	130(△73)	130(△73)

○ 한편, 소유분 자동차세 중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액은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차등 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고,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나 수소차 등의 경우는 정액제(비영업용 승용 10만원)로 운영하고 있음.

자동차세 세율(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표준세율))

①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②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③ 승합자동차 (이하 생략)

- 이는 1991년부터 「지방세법」*에 신설된 ‘기타 승용자동차’의 정액 세율을 현행 전기차 등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행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세액이 약 40만원* 수준인 점과 비교할 때,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연간 10만원(정액)에 그치고 있고 그 등록 대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바, 친환경차량의 가격과 성능을 감안한 적정 자동차세 세율 개선을 위한 재무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시행 1991. 1. 1., 법률 제4269호, 1990. 12. 31.,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관계부처 합동)는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2030년까지 친환경자동차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비중을 30%까지 확대하는 계획(2021년 2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자동차세 세율 인상 언급 없음).

⑤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조 7,869억원) 대비 3.9%(1,080억원) 부족 징수된 2조 6,789억원으로, 전년(2조 7,603억원) 대비 2.9%(814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지방세수입의 11.2%를 차지하는 규모임.

※ 2022회계연도 지방소비세 세입 결산: 예산현액(2조 1,892억원) 대비 26.1% (5,711억원) 초과 수납된 2조 7,603억원

〈 지방소비세 징수실적 〉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예산대비		2022년 결산액	전년대비	
	예산액	징수액	증감액	비율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7,869	26,789	-1,080	96.1	27,603	-814	-2.9
소비지출	7,118	6,959	-159	97.8	7,224	-265	-3.7
취득세보전	9,300	8,957	-343	96.3	9,674	-717	-7.4
전환사업	11,451	10,873	-578	95.0	10,705	168	1.6

- 지방소비세는 재화·용역의 공급, 수입 등에 과세하는 부가가치세(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입 과목으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그동안 세율이 지속 인상되었으며, 부가가치세의 일정률*을 지역별 안분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세목임.

※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율 〉

연도	2010	2014	2019	2020	2022	2023
세율	6%p	11%p	15%p	21%p	23.7%p	25.3%p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13.8월)에 따른 세수 보전조치로 5% → 11%로 인상('14.3월) →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15%로 인상('19년 4%인상) → 국가보조사업 지방이양전환에 따라 21%로 인상('20년 6%인상) → 23.7%('22년 2.7%인상) → 25.3%('23년 1.6%인상)

* (세율) 과세표준의 25.3% (2022회계연도 23.7% 대비 1.6% 인상)

** (안분기준 및 안분납입)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소비세 징수액의 안분은 각 시도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지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나온 비율에 따라 안분,

1. (소비지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지수
2. (가중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적용, 수도권 100%, 광역시 200%, 도 300%

< 지방소비세 세율 변동 경과 >

- (도입)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 및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5%를 세액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도입(2010)
- (확대)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른 재정보전('14) 및 1·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19~'20, '22~'23)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 (2014)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6%p(5%→11%) 인상
 - * 9억초과(4%), 9억이하(2%) → 9억초과(3%), 6~9억(2%), 6억이하(1%)
 - (2019, 2020)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한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19년 4%p(11%→15%) 인상, '20년 6%p(15%→21%) 인상
 - (2022)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 2.7%p(21%→23.7%) 인상
 - (2023) 1.6%p(23.7%→25.3%) 인상

○ 다만, 2023회계연도의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23.7%→25.3%)에도 불구하고 예산(2조 7,869억원) 대비 3.9%(1,080억원) 부족 징수된 것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인 부가가치세(국세)의 부족 징수(전년 대비 7.9조원(△9.6%), 예산 대비 9.4조원(△11.3%))에 따른 것임.

- 세율인상(23.7%p → 25.3%p)이 되었지만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가계의 실질 소비여력이 줄어들면서 민간소비 위축 및 수입감소로 부족징수
 - 2023년 국세 결산 부가가치세 전년실적 대비 △7.9조원 감소
 - ▶ 수입액 변동 : ('22) 7,314억불 → ('23) 6,427억불 <△12.1%>
 - 2023년 연간 민간소비 1.8% 증가(상반기 3.1%, 하반기 0.6%)
 - 2023년 연간 소비자물가 3.6% 상승(상반기 +4.0%, 하반기 +3.3%)

○ 한편,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분의 일부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에 대한 전환사업비로 2022년도까지 선공제하도록 한 규정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등의 정부 정책으로 인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21.12.7.)

- 최근 6년(2018~2023회계연도) 동안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증가세에 있고, 지속적인 지방소비세 세율의 인상(세율 11% → 25.3%)에 따른 세율 신장률(2018년~2023년까지 세율의 증가율)이 130.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 같은 기간 지방소비세 세입 결산액 신장률은 91.5%(140억원 → 268억원)에 머물러, 지방소비세 세율 신장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입 신장률은 이에 미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울시 지방소비세 세입 확충 경과〉

(단위: 억원, %)

지방소비세 (세율)	연도별 현황						신장율
	2018① (11%)	2019 (15%)	2020 (21%)	2021 (21%)	2022 (23.7%)	2023② (25.3%)	(②-①)/① (130.0%)
예산액	12,127	17,948	20,414	18,243	21,892	27,869	129.8%
결산액	13,991	19,283	19,428	20,776	27,603	26,789	91.5%
수납률(%)	115.4	107.4	95.2	113.9	126.1	96.1	-

〈 부가가치세 세입결산 실적〉

(단위: 조 원/%)

부가가치세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결산액	70.0	70.8	64.9	71.2	81.6	73.8

※ 출처: e-나라지표(index.go.kr) 내 국세수입실적(부가가치세)

-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인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입은 국내 경기 여건에 따라 변동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 지방소비세 세율에 합당한 실질적인 세입의 확충을 위하여, 법령개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 2021.12.7.)으로 2026년도까지 연장된, 전환사업비 선공제 제도가 또다시 연장되어 ‘세율 대비 세입 과소징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음.

〈 지방소비세 개요 (2023회계연도 기준) 〉

-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 납입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납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납부('22년 납입관리자 : 충청북도지사)

① 소비지출 비율(15%) 분

- '10.1.1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세목으로 부가가치세(국세)의 15% 적용
[5%('18년)→9%('19년)→15%('20년)→17.7%('22년)]
- 안분방법
 - 1) 전국지방소비세(5%) × 지역별 안분비율
 - 2) 전국지방소비세(12.7%) 중 5.77조원: 균특회계 전환사업 보전비율에 따라 지급
 - 3) 전국지방소비세(12.7%) 중 5.77조원 차감 후 잔액 × 지역별 안분비율

② 취득세 감면 보전(6%) 분

- '13.12.26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영구인하로 감면된 취득세 보전 성격
- 안분방법 : 전국지방소비세(6%)-[지방교부세(19.24%)+지방교육청 교부금(20.27%)]
× 서울시 안분비율 = 지방소비세 세입

⑥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137억원) 대비 5.6% (119억 2천 5백만원) 초과 수납된 2,256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2,155억 6천 9백만원) 대비 4.6%(100억 5천 6백만원) 감소한 수준이며, 지방세 수입의 0.9%를 차지하고 있음.

※ 2022회계연도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세입 결산: 예산현액(2,100억원) 대비 2.7%(56억원) 초과 수납된 2,156억원

〈 지난연도 시세 징수실적 〉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예산대비		2022년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감액 (B-A)	비율 (B/A)		증감액 (B-C)	증감률 (B-C/C)
지난년도시세	2,137	2,256	119	105.6	2,156	100	4.6

- 재무국은 강력한 징수율 제고활동(체납활동 및 행정제재 등)을 통해 목표(2,137억원)를 초과 달성(105.6%)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 주요 활동 사항

· 고액체납자 가택수색(102명 32억원), 사해행위 소송·근저당권 말소 소송·상속 대위 등기 추진(41건 10억원), 예금, 공탁금 등 채권조사(253억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1,316명), 출국금지(248명), 관허사업제한(780명) 등」

- 2023회계연도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징수 목표액) 규모는 2,13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징수결정액 9,302억원)의 23.0% 수준에 그치고 있고, 직전 5년(2018~2022회계연도) 평균 징수액 2,125억원은 같은 기간 평균 전체 지방세 체납액(징수결정액 9,302억원)의 23.1% 수준임.
- 즉, 지방세 수입은 최근 징수실적에 준하여 매년 예산(징수목표)를 수립하여 늘 징수해 온 정도의 수준에서 연례적으로 지난년도 시세 예산(징수 목표액)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매년 총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20% 전후 세입예산 편성(징수목표액)의 반복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목표수립과 다양한 징수 기법 발굴을 통해 징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됨.

〈직전 5년간 결산 실적 대비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단위: 백만원)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2023	직전5년 예산평균	2022	2021	2020년	2019년	2018년
예산(A)	213,700	218,249	210,000	201,005	222,078	221,567	236,597
징수결정액(B)	930,205	919,753	778,459	699,543	834,347	1,030,407	1,256,009
수납액(C)	225,625	212,519	215,569	235,753	184,629	226,319	200,327
정리보류액	247,267	218,109	97,505	49,702	245,339	314,213	383,785
다음연도이월액	457,312	489,125	465,384	414,088	404,379	489,875	671,898
수납률(C/A)	105.6	97.4	102.7	117.3	83.1	102.1	84.7
징수율(C/B)	24.3	23.1	27.7	33.7	22.1	22.0	15.9

- 다음으로, 정리보류란 소멸시효의 요건은 미충족되나,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실익 없는 재산압류 등의 사유로 체납된 지방세 중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어 징수절차를 일시 중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최근 5년간 평균, 정리보류 처분(1,909억 3천 2백만원) 후 이를 취소하여 징수한 지난년도 시세 규모는 293억 1천 4백만원(27.2%) 수준임.

〈최근 5년간 정리보류 취소 및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평균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정리보류액(A)	190,932	247,267	97,505	50,357	245,339	314,190
정리보류취소액(B)	86,392	53,486	106,095	100,674	84,705	87,001
취소율(B/A)	78.5	21.6	108.8	199.9	34.5	27.7
징수액(C)	29,314	22,893	28,214	39,025	23,832	32,604
정리보류액 대비(C/A)	27.2	9.3	28.9	77.5	9.7	10.4
정리보류취소액 대비(C/B)	34.8	42.8	26.6	38.8	28.1	37.5

- 따라서 정리보류 처분 후에도 주기적인 재산조회 등 기초적인 관리를 꾸준히 이행하여, 압류대상 재산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방지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의 마련과 지방세심위원회의 심의(정리보류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 등을 통해 정리보류된 지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체납 지방세에 대한 세세목별 결산 실적을 보면, 총 체납액(징수 결정액 9,302억원) 중 지방소득세가 58.8%(5,467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나, 징수율(10.6%)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지방소득세 독립세화(2015년)에도 불구하고 체납 지방소득세의 징수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세처분 후 과세되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에서 비롯한 것으로, 국세에 앞서서 조세채권 확보 등 방안 마련에 재무국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세세목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합 계	취득세	주민세	지방 소득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재산세 (특별시분)	재산세 (도시지역)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징수결정액	930,206	75,181	77,156	546,713	94,311	1	80,345	1,768	6,590	48,141
(점유율)	100.00	8.1	8.3	58.8	10.1	0.0	8.6	0.2	0.7	5.2
수납액	225,626	29,909	13,030	57,848	55,632	0	40,215	244	2,121	26,627
정리보류액	247,267	9,085	21,109	204,711	5,146	1	3,405	121	625	3,064
미수납액	457,313	36,187	43,017	284,154	33,533	0	36,725	1,403	3,844	18,450
징수율	24.26	39.78	16.89	10.58	58.99	0.00	50.05	13.80	32.19	55.31
정리보류율	26.58	12.08	27.36	37.44	5.46	100.00	4.24	6.84	9.48	6.36
미수납율	49.16	48.13	55.75	51.97	35.56	0.00	45.71	79.36	58.33	38.32

〈최근 5년간 지방세 지난해도수입 세세목별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시세소계	예산	213,700	210,000	201,005	222,078	221,567
	징수결정액	930,205	778,459	699,543	834,347	1,030,407
	수납액	225,625	215,570	235,753	184,629	226,319
	정리보류액	247,267	97,505	49,701	245,339	314,213
	다음연도이월액	457,313	465,384	414,088	404,379	489,875
	징수율	24.26	27.69	33.70	22.13	21.96
취득세	징수결정액	75,181	51,093	55,307	55,176	75,234
	수납액	29,909	22,449	24,322	7,330	22,141
	정리보류액	9,085	5,812	6,215	20,149	17,927
	다음연도이월액	36,187	22,832	24,770	27,697	35,165
	징수율	39.78	43.94	43.98	13.28	29.43
주민세	징수결정액	77,156	16,256	15,383	15,834	16,782
	수납액	13,030	5,818	5,395	5,682	5,965
	정리보류액	21,109	1,820	1,987	2,244	3,228
	다음연도이월액	43,017	8,618	8,001	7,907	7,589
	징수율	16.89	35.79	35.07	35.88	35.54
지방소득세	징수결정액	546,713	485,638	396,990	541,450	674,864
	수납액	57,848	60,942	74,634	54,796	58,684
	정리보류액	204,711	79,888	29,778	208,848	260,371
	다음연도이월액	284,154	344,808	292,578	277,806	355,809
	징수율	10.58	12.55	18.80	10.12	8.70
자동차세	징수결정액	94,311	99,806	103,446	106,929	121,305
	수납액	55,632	60,525	62,061	62,443	69,934
	정리보류액	5,146	4,705	5,417	6,478	12,471
	다음연도이월액	33,533	34,576	35,967	38,008	38,900
	징수율	58.99	60.64	59.99	58.40	57.65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담배소비세	징수결정액	1	1	1	1	1
	수납액	0	0	0	0	0
	정리보류액	1	0	0	0	0
	다음연도이월액	0	1	1	1	1
	징수율	0.00	0.00	0.00	0.00	0.00
재산세 (특별시분)	징수결정액	80,345	35,833	37,115	30,032	40,567
	수납액	40,215	17,293	19,038	12,442	17,584
	정리보류액	3,405	1,463	1,721	1,760	7,626
	다음연도이월액	36,725	17,075	16,357	15,830	15,357
	징수율	50.05	48.26	51.29	41.43	43.35
재산세 (도시지역 분)	징수결정액	1,768	37,974	35,726	32,381	38,643
	수납액	244	19,834	18,359	15,241	19,044
	정리보류액	121	1,365	1,548	1,524	4,617
	다음연도이월액	1,403	16,777	15,818	15,617	14,982
	징수율	13.80	52.22	51.39	47.07	49.28
지역자원 시설세	징수결정액	6,590	6,248	6,633	6,427	7,956
	수납액	2,121	2,484	2,702	2,213	3,173
	정리보류액	625	273	375	343	893
	다음연도이월액	3,844	3,491	3,556	3,871	3,890
	징수율	32.19	39.76	40.74	34.43	39.88
지방교육세	징수결정액	48,141	45,610	48,943	46,116	55,056
	수납액	26,627	26,225	29,242	24,482	29,795
	정리보류액	3,064	2,179	2,660	3,993	7,079
	다음연도이월액	18,450	17,206	17,041	17,642	18,182
	징수율	55.31	57.50	60.12	53.09	54.12

-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실적(1,875백만원)을 보면, 전년 대비 체납 지방세 징수액은 5.6%(119억 2천 5백만원)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포상금은 전년 대비 3.7%(7천 2백만원) 감소한 18억 7천 5백만원을 지급하였음.

〈최근 5년간 지난연도 시세 징수 대비 징수포상금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액	예산현액 대비		징수포상금(증가율)		
			증감액	증감률	계	시	자치구
2023	213,700	225,625	11,925	5.6	1,875(△3.7)	588(16.2)	1,287(△10.7)
2022	210,000	215,570	5,570	2.6	1,948(1.3)	506(△20.1)	1,442(11.8)
2021	201,005	235,753	34,748	17.2	1,923(12.4)	633(39.1)	1,290(2.7)
2020	222,078	184,628	-37,450	-16.9	1,711(△16.5)	455(△6.6)	1,256(△19.6)
2019	221,567	226,319	4,752	2.1	2,049(3.6)	487(22.1)	1,562(△1.0)

- 한편, 지난년도 시세 징수액은 2,256억 2천 5백만원으로 이중 서울시 징수 규모는 21.2%(479억 3천 2백만원) 수준이고, 자치구에서는 78.8% (1,776억 9천 3백만원) 규모를 징수하여, 서울시의 지방세 중 지난년도수입 징수는 대부분 자치구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 자치구의 적극적인 체납 세입징수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현행 포상금 산정 기준인 징수액에 더하여 징수 건수까지 반영하여 자치구의 징수 노력도 반영하는 등 포상금 지급 기준 개선의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 최근 5년간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결산 현황 〉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결산율
2023	2,137	2,137	2,256	119	105.6
2022	2,100	2,100	2,156	56	102.7
2021	2,010	2,010	2,358	348	117.3
2020	2,221	2,221	1,846	-375	83.1
2019	2,216	2,216	2,263	47	102.1

〈 2023회계연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 〉

(단위: 억원, %)

구분 세목	'23년		'23년 예산대비		'22년		'22년 실적대비	
	예산	실적	예산차액	진도율	예산	실적	실적차액	증감률
시세 계	241,122	238,628	-2,494	99.0	230,956	261,638	-23,010	-8.8
보통세	218,780	217,317	-1,463	99.3	207,082	238,330	-21,013	-8.8
취득세	52,219	51,472	-747	98.6	62,046	58,712	-7,240	-12.3
부동산	45,408	43,566	-1,842	95.9	55,326	51,146	-7,580	-14.8
차량	6,811	7,906	1,095	116.1	6,720	7,566	340	4.5
주민세	6,724	7,712	988	114.7	6,167	7,287	425	5.8
개인분	162	161	-1	99.4	162	164	-3	-1.8
사업소분	603	589	-14	97.7	594	625	-36	-5.8
종업원분	5,959	6,962	1,003	116.8	5,411	6,498	464	7.1
재산세	35,221	34,749	-472	98.7	38,276	39,189	-4,440	-11.3
특별시분	16,782	16,595	-187	98.9	18,189	18,862	-2,267	-12.0
도시지역분	18,439	18,154	-285	98.5	20,087	20,327	-2,173	-10.7
자동차세	10,525	9,946	-579	94.5	12,165	10,258	-312	-3.0
소유분	6,425	6,310	-115	98.2	6,164	6,260	50	0.8
주행분	4,100	3,636	-464	88.7	6,001	3,998	-362	-9.1
레저세	1,061	1,051	-10	99.1	299	1,051	0	0.0
경마	774	724	-50	93.5	162	727	-3	-0.4
경륜	205	245	40	119.5	110	240	5	2.1
경정	82	82	0	100.0	27	84	-2	-2.4
담배소비세	5,822	5,766	-56	99.0	5,715	5,886	-120	-2.0
지방소비세	27,869	26,789	-1,080	96.1	21,892	27,603	-814	-2.9
소비분	7,118	6,959	-159	97.8	6,112	7,224	-265	-3.7
취득세보전	9,300	8,957	-343	96.3	7,525	9,674	-717	-7.4
전환사업	11,451	10,873	-578	95.0	8,255	10,705	168	1.6
지방소득세	79,339	79,832	493	100.6	60,522	88,344	-8,512	-9.6
종합소득	9,099	10,099	1,000	111.0	7,844	10,139	-40	-0.4
양도소득	7,408	7,388	-20	99.7	6,838	12,616	-5,228	-41.4
법인소득	26,310	25,522	-788	97.0	16,782	30,584	-5,062	-16.6
특별징수	36,522	36,823	301	100.8	29,058	35,005	1,818	5.2
목적세	20,205	19,055	-1,150	94.3	21,774	21,152	-2,097	-9.9
지역자원시설세	3,131	2,951	-180	94.3	3,097	3,254	-303	-9.3
지방교육세	17,074	16,104	-970	94.3	18,677	17,898	-1,794	-10.0
지난년도시세	2,137	2,256	119	105.6	2,100	2,156	100	4.6

다. 세외수입 결산

- 202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은 예산현액(3,532억 9백만원) 대비 8.2%(290억 5천만원) 초과 징수된 3,822억 5천 9백만원이며, 이는 전년 결산액(3,404억 4천 6백만원) 대비 12.3%(418억 1천 3백만원) 증가한 수준임.

※ 2022회계연도 세외수입 결산: 예산현액(2,968억 1천만원) 대비 14.7%(436억 3천 6백만원) 초과 징수된 3,404억 4천 6백만원

〈2023회계연도 재무국 세외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예산대비		2022 결산액(C)	전년대비 증/감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세외수입	353,209	382,259	29,050	8.2%	340,446	41,813	12.3%

1) 세입결손 과목

- 재무국 세외수입의 11개 세입과목 중 예산현액 대비 세입의 결손 발생 과목은 3개 세입 과목(‘증지수입’, ‘위약금’, 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등)임.

〈세외수입 세입 결손 과목〉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 수납률	징수율
				정리보류	시효완성			
세외수입	353,209	396,187	382,259	49	271	13,608	108.2	96.5
경상적세외수입	127,655	144,039	143,718	0	0	321	112.6	99.8
수수료수입	895	520	520	0	0	0	58.1	100
증지수입	895	520	520	0	0	0	58.1	100
임시적세외수입	223,748	250,264	237,181	49	271	12,763	106.0	94.8
기타수입	70,728	71,444	71,284	0	0	161	100.8	99.8
위약금	222	129	107	0	0	22	48.2	82.9
지난년도수입	5,150	14,236	1,885	49	271	12,030	36.6	13.2
지난년도수입	5,150	14,236	1,885	49	271	12,030	36.6	13.2

가) 증지수입(수입증지 판매수입)

- “경상적세수입”의 ‘수수료수입’ 중 ‘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에 따른 수입을 계상하는 세입과목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8억 9천 5백만원) 대비 58.1% 수납된 5억 2천만원 수준임(3억 7천 5백만원(△41.9%) 부족 징수).
- 재무국은 요양보호사 신규 자격증 발급 수수료 업무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 이관(2023.1.1.부터)됨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이미 예고된 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41.9%(3억 7천 5백만원)의 세입이 부족 징수된 것은 자격증 신규발급 수수료 추정치의 산출에 있어서 정확하지 못한 추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련 세입예산 추계에 보다 면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연도별 증지수입 징수 실적〉

(단위: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723,712	787,524	786,662	1,027,909	832,384	1,175,489	895,187	519,581	585,965

나) 위약금(공사 및 납품 지연배상금)

-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 중 ‘위약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지연배상금 수납에 대한 수입을 계상하는 세입과목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억 2천 2백만원) 대비 48.2% 수납된 1억 7백만원 수준임(1억 1천 5백만원(△51.8%) 부족 징수).

- 부족징수 사유로는 지연배상금 부과 대상의 지속적인 감소('22년 14건 → '23년 10건)에 따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본 세입과목의 세수 추계 방식을 보면 직전 5년간 결산액에서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액을 세입 예산으로 계상함으로써 매년 과도한 세입 추계에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바,
 - ※ 2019회계: 46.0%, 2020회계: 515.9%, 2021회계: 81.5%, 2022회계 75.4%, 2023회계 48.2%
- 본 위약금은 계약 건수에 비례하지 않고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 규모에 따라 각각 세입액이 결정되는 구조로써 미리 그 세입 규모를 추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겠으나, 면밀한 계약 진행 현황 파악 등을 통하여 보다 과학적인 추계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연도별 위약금 징수 실적〉

(단위: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175,018	902,861	194,550	158,625	232,068	116,168	221,966	107,110	117,057

다) 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 세외수입 중 '지난년도수입'은 지난년도 미징수 매각대금,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등 관련 세외수입 미수금을 계상하는 세입 과목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51억 5천만원) 대비 36.6% 수납된 18억 8천 5백만원 수준임 (32억 6천 5백만원(△63.4%) 부족 징수).
- 또한, 해당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낮은 징수율(36.6%)도 문제지만, 이를 2023회계연도 결산서 상 세입예산(지난년도수입)에 계상하지 않은 부서 (재무과, 세제과)도 발생하였음.

- 「지방재정법」(제34조)에서는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 재무국 부서별 세외수입 발생 형태를 보면,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이 징수되었는바,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예산편성 일반지침'에 따라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세원을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라. 보조금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결산

- 2023회계연도 재무국(세제과) 소관 국고보조금 세입은 예산현액(15억 1천 1백만원) 대비 99.3%(15억원) 수납되었으며, 전년 세입 결산액(15억 2천 6백만원) 대비 1%(1천 5백만원) 감소한 수준임.
- 202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결산액은 예산현액(3조 5,300억 1천 9백만원) 대비 100.0% 징수되었음.
 - 이는 전년 결산액(6조 1,379억 6천 2백만원) 대비 42.5%(2조 6,079억 4천 4백만원) 감소한 수준으로, 전년도(2022회계연도) 초과세입 등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이 2023회계연도 세입으로 편성된 것임.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징수율	
				C/A	C/B
합 계	27,996,923	28,928,208	27,776,577	99.2	96.0
보조금	1,511	1,500	1,500	99.3	100.0
국고보조금등	1,511	1,500	1,500	99.3	100.0
국고보조금	1,511	1,500	1,500	99.3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30,019	3,530,019	3,530,019	100.0	100.0
보전수입등	3,530,019	3,530,019	3,530,019	100.0	100.0
잉여금	3,254,857	3,254,857	3,254,857	100.0	100.0
순세계잉여금	3,254,857	3,254,857	3,254,857	100.0	100.0
전년도이월금	275,162	275,162	275,162	100.0	100.0
전년도이월사업비	275,162	275,162	275,162	100.0	100.0

1) 순세계잉여금

- 재무국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발생한 2023회계연도 계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 규모는 3조 2,548억 2천 7백만원으로, 전년(5조 8,712억 2백만원)* 대비 44.6%(2조 6,163억 4천 5백만원) 감소했음.

* 2022회계연도 발생 잉여금(3조 2,548억 2천 7백만원) 세입 계상: 2023회계 순세계잉여금(1조 6,819억 5천 9백만원) 및 법정잉여금(4조 1,892억 4천 3백만원)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예산의 초과 수납이나,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등의 규모에 따라 발생하여 다음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되는 과목임.

〈 2023회계 순세계잉여금 산출 〉

(단위: 억원)

구분 (결산)	예산현액	세입결산 수납액 ㉠	세출결산 집행액 ㉡	결산상 잉여금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순세계 잉여금 ㉥=㉢-㉣-㉤
2022	53조 4,688	55조 5,717	50조 2,766	5조 2,951	1조 740	832	4조 1,379
일반회계	38조 3,196	40조 7,141	37조 1,168	3조 5,973	2,751	674	3조 2,548
특별회계	15조 1,492	14조 8,576	13조 1,598	1조 6,978	7,989	158	8,831
2021	47조 7,591	52조 8,591	45조 3,337	7조 5,254	9,972	854	6조 4,428
증 감	5조 7,097	2조 7,126	4조 9,429	△2조 2,303	768	△22	△2조 3,049

-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주된 사유는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에 따른 지방세(3조 682억원) 등 2조 3,945억원의 초과징수와 집행액·이월액·반납금 등을 제외한 일반회계 집행잔액(8,605억원) 등에 따른 것으로, 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법정 의무경비에 먼저 사용 후 나머지 부분을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보조금 사용잔액 제외

〈 2023회계 세출 결산 결과 〉

(단위: 억원)

구분	예산현액 ㉑	집행액 ㉒	다음연도이월액 ㉓	보조금반납금 ㉔	집행잔액 (㉑-㉒-㉓-㉔)
2022	53조 4,688	50조 2,766 (94.0%)	1조 1,141 (2.1%)	830 (0.16%)	1조 9,951 (3.7%)
일반회계	38조 3,196	37조 1,168 (96.9%)	2,751 (0.7%)	672 (0.18%)	8,605 (2.2%)
특별회계	15조 1,492	13조 1,598 (86.9%)	8,390 (5.5%)	158 (0.10%)	1조 1,346 (7.5%)
2021	47조 7,591	45조 3,337 (94.9%)	1조 1,616 (2.4%)	831 (0.17%)	1조 1,807 (2.5%)
증 감	5조 7,097	4조 9,429	△475	△1	8,144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편성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A)+(B)		초과세입금 (A)	세출예산 집행잔액(B)
	금액	전년 대비증가율(%)		
'23년 편성	3조 2,548억원	△44.6	2조 3,945억원	8,605억원
'22년 편성	5조 8,712억원	69.4	5조 3,401억원	5,311억원
'21년 편성	3조 4,653억원	50.4	2조 9,298억원	5,355억원
'20년 편성	2조 3,044억원	7.6	1조 8,407억원	6,224억원
'19년 편성	2조 1,419억원	△11.9	1조 6,176억원	6,000억원

- 순세계잉여금의 규모와 비중은 2022회계연도에 이어 2023회계연도에도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규모가 크고, 전년도 세입을 그 다음연도에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예산 운영 형태인바, 정확한 세수 추계, 사업별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규모의 산정, 편성된 예산의 성실한 집행을 통해 제한된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마. 재무국 세입예산 종합 분석

- 종합적으로, 202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 결산액은 0.8%(2,203억 4천 6백만원) 부족 징수된 27조 7,765억 7천 7백만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4.9%(4조 8,671억 5천 4백만원) 감소한 수준으로, 서울시 전체 세입(50조 7,628억원)의 54.7%를 차지하는 규모임.
-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24조 1,122억원) 대비 1.0%(2,494억원) 부족 징수된 23조 8,628억원으로,
 - 2021회계연도 이후 전년 예산 대비 결산률(예산현액 대비 징수액)은 지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2023회계연도의 경우는 지방세수입(재산세 등)을 감액(7,696억원)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2013회계연도 이후 10년만에 1.0% (2,494억원)의 세입 결손까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결산액 규모 또한 전년(2022회계연도, 26조 1,638억원) 대비 2조 3,010억원 규모 감소하는 지방세 수입 규모의 역성장이 나타났음.
- 취득세는 예산현액(5조 2,219억원) 대비 1.4%(747억원) 부족 징수된 5조 1,472억원이지만, 차량 취득세는 고가의 외국산 차량 및 친환경차량의 증가로, 전년 결산(7,566억원) 대비 4.5%(340억원) 증가한 7,906억원 수준으로 부동산경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재산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3조 5,521억원) 대비 1.3%(472억원) 부족 징수된 3조 4,749억원으로, 전년(3조 9,189억원) 대비 11.3%(4,440억원) 감소한 수준임.

-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정부 정책(2022.11.23. 부처합동)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2023년도 재산세 세입 또한 감소한 것으로, 재무국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특별시 세입 대상 재산세와 병기세목의 세입예산을 감액(7,696억원) 편성했음에도, 결산 결과 부족 징수된 것임.
- 자동차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1조 524억원) 대비 5.5%(578억원) 부족 징수된 9,946억원임.
 - 정부의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정책의 지속 연장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세수 결손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연간 10만원(정액)에 그치고 있는바, 가격과 성능을 감안한 적정 자동차세 세율 산정을 위한 재무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지방소비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조 7,869억원) 대비 3.9%(1,080억원) 부족 징수된 2조 6,789억원으로 부가가치세(국세)를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25.3%)으로 하는 세목임.
 - 최근 연차적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세율 11%→25.3%)에 따른 세율 신장률이 130.0% 수준이나, 세입 결산액 신장률(결산액 규모의 증가율)은 91.5% (140억원 → 268억원)에 그치고 있음.
 - 법정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액 규모(부가가치세의 25.3%)에도 불구하고, 전환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과세표준에서 이를 선공제하여 제외하고 있는 기간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21.12.7.)으로 2026년도까지 연장되어 있는바, 또다시 연장되지 않도록 대정부 활동이 필요함.

- 2023회계연도 계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 규모는 3조 2,548억 2천 7백만원으로, 전년(5조 8,712억 2백만원)* 대비 44.6%(2조 6,163억 4천 5백만원) 감소한 수준임.
- 순세계잉여금(지방세 초과세입 등)의 과다한 발생은 세입 징수 당해 연도 필요 사업에 예산을 적기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세입 운영 형태라고 할 것임.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액은, 예산현액(3조 2,555억원) 대비 96.9%(3조 1,550억 5천 8백만원)을 집행하여, 전년 대비 △2,767억 9천 5백만원 감소, 집행률은 △2.4%(99.3% → 96.9%) 감소하였고,
- 집행잔액(3.1%)은 1,004억 4천 1백만원으로, 전년(208억 1천 8백만원) 대비 482.5%(796억 2천 3백만원) 증가한 수준임.

※ 202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액은 예산현액(3조 4,576억 6천 2백만원) 대비 99.3%(3조 4,318억 5천 3백만원) 집행

〈 2023회계연도 재무국 사업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3,255,500	3,155,058	-	100,441	3.1%
일반예산계	817,695	799,381	-	18,313	2.2%
인력운영비(통합편성)	815,592	797,461	-	18,130	2.2%
기본경비	2,103	1,920	-	183	8.7%
재무활동	16,674	16,674	-	0	0.0%
사업예산계	2,421,131	2,339,003	-	82,128	3.4%
일반사업비	45,854	40,087	-	5,767	12.6%
타기관 지원	2,375,277	2,298,916	-	76,361	3.2%
자치구 재정보전금	1,790,746	1,727,272	-	63,474	3.5%
시세 징수교부금	581,888	569,001	-	12,887	2.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643	2,643	-	0	0.0%

가. 예산의 변경사용

1) 예산의 변경사용

- 재무국 2023회계연도 예산의 변경사용은 2건에 1억 3천 4백만원으로, 전년(2건, 3억 5백만원)에 비해 56.2%(1억 7,166만 1천원) 감소하였음.

〈2023 회계연도(일반회계) 변경사용 집행현황〉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총 2건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464,000	115,836		2023-03-28	348,164	327,003	21,161 (6.1)
	공공운영비 (201-02)	1,308,245		115,836		1,424,081	1,417,423	6,658 (0.5)
고액 체납시세 징수	공공운영비 (201-02)	137,280	18,000		2023-12-28	119,280	111,526	7,754 (6.5)
	사무관리비 (201-01)	425,300		18,000		443,300	443,292	8 (0.0)

※ 예산의 변경사용: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2023년 3월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업의 예산 변경사용은, 본 사업 중 공유재산에의 재해 발생에 대비한 보험료(공제회비) 부족분과 수시분 지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편성목) 내에서 사무관리비 (1억 1,586만 6천원)를 공공운영비로 통계목 간 상호 변경 사용한 것임.

※ 변경사유 :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 대상 전수조사로 신규 가입 건수가 증가
 · '22년도 신규 가입 건수 : 35건 → '23년도 신규 가입 건수 : 151건

[수시분 지출 예상액 산출내역]

· 최근 5년간 신규 취득에 따른 수시분 지출액 평균 : 9,272천원 (단위: 건, 천원)

연번	연도	지출액	비고
계		46,362	
1	2022	6,127	
2	2021	14,492	영어마을(관악), 서울바이오허브 등
3	2020	10,522	
4	2019	13,874	서울생활사 박물관 등
5	2018	1,347	

· 미가입 건 후속조치 가입 예상액 : 21,736천원

[산출] 미가입 건 후속 가입 예상분 평균 보험료 추계액 (418천원) × 수량 (52건) = 21,736천원

- 같은 해 12월 12월 “고액 체납시세 징수” 사업 예산 변경사용은 고액 체납시세 징수를 위한 공매대행 수수료(1천 410만원)와 개문비용(390만원)의 부족으로,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편성목) 내에서 공공운영비(1천 8백만원)를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간 상호 변경 사용한 것임.
- 본 예산의 변경사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예산 운영 형태로, 지양해야 하나, 예산을 변경사용하고도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면밀한 제도 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20% 이상 불용 또는 1억원 이상 불용

- 재무국 세출예산 결산 결과 불용액은 1,004억 4천 1백만원(불용률 3.1%)으로 전년(208억 1천 8백만원) 대비 482.5%(796억 2천 3백만원) 증가한 수준임.
- 이 중 사업별 통계목별 20% 또는 1억원 이상 불용 발생 사업은 25개 사업(26개 통계목)에서 1001억 3천 8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재무국 총 불용액(1,004억 4천 1백만원)의 99.7%를 차지하고 있음.

< 2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불용 사업(통계목별)>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통계목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국외업무여비	30	19	63.4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자제로 집행잔액 발생
2022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기타보상금	16	6	38.3	- 2023년 3월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 수가 '20명' →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변경되어 15명의 위원이 선임됨. 당초 편성된 예산액(20명) 중 15선임된 위원(15명)에 대한 여비만 집행함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공관등에대한자본적투자사업비	86	28	32.3	- DR구축 예정지 완공 지연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이 변경되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집행잔액 발생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사무관리비	91	36	40.0	- 「서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이 개정되어 사업소 대행계약 대상 금액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이용수수료 납부 건수가 감소하였음('22년 2,001건 -> '23년 1,907건)
기본경비	국내여비	67	66	39.5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출장 자제로 집행잔액 발생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보수	548,042	7,681	1.4	- 인사이동 등 현원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
	기타직보수	116,743	1,611	1.4	
	공무직무계약근로자보수	86,436	5,875	6.8	
	직급보조비	22,775	281	1.2	
	성과상여금	24,677	291	1.2	
	공무직무계약근로자보령부담금 등	16,919	2,392	14.1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3	1	25.0	- 과업심의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가 2시간 미만으로 개최되어 2시간 이상 초과수당으로 편성한 예산이 미지급됨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29	29	22.4	- 회의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개별주택가격 공	국내여비	1	0	40.5	- 출장 감소로 인한 여비 집행잔액

- 이에 더하여 “재정보전금(자치구기타자원조정비)” 634억 7천 4백만원(불용률 3.5%), “시세 징수교부금(징수교부금)” 128억 8천 7백만원(불용률 2.2%),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의 분담금(불용률 100.0%, 49억 9천만원) 등의 사업에서 과도한 불용액(총 1,004억 4천 1백만원)이 발생하였는바,
- 불용액은 가용재원을 결국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여, 세입 회계연도의 긴급한 필요 사업에 해당 예산 불용액만큼 예산을 적기 투입할 수 없게 하는 비효율적 예산 운영의 대표적인 형태로 보이며,
- 서울특별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도한 불용 발생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으로 적정 예산의 편성 노력과 필요시 해당 회계연도 중 추가경정예산 감액 편성 등 예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무국의 책임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재무국 1억원 이상 불용 현황(부서별/사업별) 〉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재 무 국	3,255,499,603	3,155,058,374	100,440,946	3.1
재 무 과	818,782,926	800,316,807	18,466,119	2.3
기본경비	1,641,610	1,492,297	149,313	9.1
인력운영비(통합편성)	815,591,486	797,461,692	18,129,794	2.2
세 제 과	1,795,321,938	1,731,771,049	63,550,606	3.5
재정보전금	1,790,745,652	1,727,271,761	63,473,891	3.5
세 무 과	592,128,397	573,941,862	18,186,535	3.1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907,925	774,746	133,179	14.7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4,990,425	0	4,990,425	100.0
시세 징수교부금	581,888,081	569,001,006	12,887,075	2.2
38세금징수과	6,537,829	6,360,484	177,345	2.7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054,412	1,884,830	169,582	8.3

다. 사고이월된 예산 전액 불용

- 재무국은 전년(2022회계연도)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사업* 예산(124억 5천 8백만원) 중 40.1%(49억 9천만원)를 다음연도(2023회계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음.

<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집행결과 >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㉔	예산성립 후증감 ^㉕	예산현액 ㉔=㉔+㉕	지출액 ㉖	집행잔액 ㉔-㉖
		본예산	사고이월액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0	4,990,425	4,990,425	0	4,990,425

※ 이월사유

- 2023년 1월 오픈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중 서울시 통합사업이 계속된 유찰(4회)로 2024년 하반기로 지연됨에 따라, 서울시 분담금 납부도 지연됨.
- 시스템 구축 관련 서울시 요구기능 공정 이행률에 따라 지급한 77억원을 제외한 49억 9천만원을 사고이월하고 23년도 구축 사업 재 발주시 집행하기 위함.

사업개요

- 사업명: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 사업기간: (구축)2019~2023년, (운영)2023~2027년 → 변경:(구축) 2019~2024년, (운영) 2023~2028년
- 서울시 구축 분담금: 22,743,788천원

사고이월 세부내역

- 예산과목 : 세수증대 동기부여,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A) ※21사고이월액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출액 (D)	사고이월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계	12,458,001	12,458,001	7,467,576	7,467,576	4,990,425	0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2,458,001	12,458,001	7,467,576	7,467,576	4,990,425	0

○ 다만, 재무국은 전년(2022회계연도)에 사고이월한 예산 전액(49억 9천만원)을 2023회계연도 중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3단계(서울시 통합) 사업의 미발주로 인하여, 전액 미집행하여 불용 처리하였음.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회계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나, 2022년도 이전에 이미 해당 사업 발주가 4차례 유찰*되었음에도 해당 예산을 2023년도로 사고이월 처리했으며,

* 2021년 11월~12월(2회), 2022년 5월~6월(2회), 총 4회 유찰

- 이를 결국 전액 불용처리 한 것은, 사고이월 제도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대규모 예산(49억 9천만원)을 2회계연도에 걸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예산 사용의 비효율을 초래하였는바,

-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본예산에 사고이월 처리 보다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대처하는 방안이 적정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구 된다고 하겠음.

○ 한편, 서울특별시는 행정안전부 통합시스템의 기능 문제* 등의 사유로 세무종합시스템을 통합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시스템을 자체개발한 후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서울시 시스템의 운영을 추진하였음.

* “1900억짜리 지방세입시스템, 한달째 오류투성이, 6월 대란 우려”(한겨레 2024.3.19.)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비 및 서울시 분담금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합계 (a+b)	지방세							세외수입						
		(a)	'19	'20	'21	'22	'23	(b)	'19	'20	'21	'22	'23		
합계(1+2)	2,884	2,454	166	525	665	418	470	211	430	26	158	240	3	3	1
국비(1)	765	728	81	217	166	52	160	52	37	10	10	10	3	3	1
지방비(2)	2,119	1,726	85	308	499	366	309	159	393	16	148	230	-	-	-
서울시	227	178.6	-	-	104	75	0.08	-	48.6	-	-	48.6	-	-	-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 2,884억원 (국비 765억원 + 지방비 2,119억원)

· (지방세) 2,454억원 ⇨ 국비 728억원 + 지방비 1,726억원

· (세외수입) 430억원 ⇨ 국비 37억원 + 지방비 393억원

-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참여 과정에서 지급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분담금’의 정산이 필요할 것인바, 면밀한 대처를 통한 자체 지방세 운영 관련 프로그램의 마련과 함께 기납부된 비용의 환수를 통해 이중으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재무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임.

〈 분담금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분담금			예산편성			
	(a)	지방세	세외수입	예산과목	편성액(b)	집행액(c)	미집행액(b-c)
계	22,713	17,855	4,858		17,690	12,700	4,990
'21년	15,219	10,361	4,858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5,000	5,000	-
'22년	7,486	7,486			12,690	7,700	4,99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	232	232	-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12,458	7,468	4,990 (이월)	
'23년	8	8	-		-	-	-

※ 분담금 집행 현황(분담금 227억원 중 127억원 집행)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추진현황

□ 추진개요

- (추진주체) 위탁기관 행안부·전국 지자체/ 수탁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발주주체)
- (추진기간) 1단계(설계, '19.9.~'20.4.) 2단계(구축, '21.2.~ '24.2.) 3단계(서울시통합, '25.11.까지)

□ 차세대 통합 근거

- ('19.2.13.) 행안부에서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서울시 세입시스템의 관리기관 설정
- ('20.4.25.)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사업 참여계획 수립(시장방침)

□ 추진경과

- 1단계인 시스템 설계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추진되었고 2단계는 시스템 구축으로 '21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추진되어 서울시를 제외한 217개 지자체에서 '24년 2월 13일에 개통*됨
 - * 차세대 2단계는 개발 미완료 등으로 3차례 개통 연기('22.2. → '23.1. → '23.10. → '24.2.)
- '21년 8월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2차년도)' 위탁협약 체결
 - － 차세대 2단계와 서울시 통합을 '23. 1월에 함께 완료할 예정이었음
- 개발원에서 서울시 통합을 '21년 10월~11월에 발주하였으나 2회 유찰
- 개발원에서 차세대 3단계라는 사업으로 '22년 5월 ~ 6월에 발주하였으나 2회 유찰됨
- 차세대 2단계 개발 미완료로 사업 완료가 지연됨에 따라 차세대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차세대 2단계 개통 후 3단계를 발주하기로 결정함(개발원, '23.3.8.)

□ 서울시 분담금 및 예산집행

- 차세대는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가 분담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는 체계로 서울시 분담금은 227억원임
- 우리시는 사업진도율을 고려하여 '21년에 50억원(50억원 편성), '22년에 77억원을 집행(127억원 편성)하고 집행잔액 50억원은 '23년으로 이월('22년에 이월을 결정할 때 차세대는 '23. 1월 개통 예정이었음)
 - － 개발원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217개 지자체가 이용할 차세대 2단계가 개통된 후 3단계를 발주하기로 하였고 차세대 2단계가 '23년 말까지 완료되지 않아 3단계도 발주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22년에 사고이월한 50억원을 '23년에 집행하지 못함

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잔액 발생

- 재무국의 2023회계연도 중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총 7개 사업에서 2,774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했으나, 이 중 6개 사업에서 825억 1천 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집행.불용〉

(단위: 천원, %)

사업명	통계목	본예산	추경예산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잔액발생 사유
합계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88,135,580	△1,700,000	86,435,580	5,874,659	6.8	임용, 퇴직, 인사이동으로 인한 현원차이에 따른 공무직(무기계 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발생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직급보조비	21,074,661	1,700,000	22,774,661	280,864	1.2	
재정보전금	자치구기타 재원조정비	1,993,531,000	△202,785,348	1,790,745,652	63,473,891	3.5	- 23년 특별시분재산세 징수 저조 (결산 전망치 1조6,797억원)로 635억원 미집행
한국지방세 연구원 법정출연금	출연금	0	2,643,438	2,643,438	-	0.0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0	41	41	-	0.2	- 예산 금액이 천원 단위로 입력 함에 따라 생긴 단수 차이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기타보상금	936,602	△559,752	376,850	962	0.3	- 모범납세자 과세 증명 수수료 보전 잔액
시세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	513,811,530	68,076,551	581,888,081	12,887,075	2.2	- 세입 징수액 부족에 따른 징수 교부금 집행잔액

- 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잔액을 발생시키는 것은 예산의 사용에 비효율을 초래하여 지양해야 할 예산 운영 형태이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당초 본예산의 편성 시 예산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여 불필요한 예산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의 본 예산 편성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최 석 훈
------	-------	-------	-------